

감 사 원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 치 기 관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용

1. 업무 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3개 기관¹⁸³⁾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선정 누락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르면 시장¹⁸⁴⁾은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등¹⁸⁵⁾을 제외하고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¹⁸⁶⁾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매년¹⁸⁷⁾ 부담

1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184)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18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및 차고 등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부과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186)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운영 중인 새울행정시스템(도로교통-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해당 내역이 제대로 수정·보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새울행정시스템(도로교통-교통유발부담금관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자료, 건축 허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을 선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새울행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시설물만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로 선정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재산세 과세자료 등¹⁸⁸⁾을 활용하여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결과, 1990. 12. 23.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용도로 사용 승인된 관내 소재 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전체 바닥 면적이 2,054㎡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소유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인데도 2018. 5. 18. 현재까지 한 차례도 부담금¹⁸⁹⁾ 부과

한 면적이 3,000㎡ 이상으로 되어 있음

18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 1.부터 해당연도 7. 31.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 31.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 16.부터 10. 31.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

188) 건축물 신축허가 자료, 용도변경허가 자료, 불법 증축 관련 자료 등을 활용

18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대상 시설물로 선정되지 않는 등 [별표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조사 대상 누락 명세”와 같이 총 50건의 시설물이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에서 누락되어 부담금¹⁹⁰⁾을 부과·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2.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3조의3 등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시설물의 규모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에 따르면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의 교통유발계수는 6.52로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쇼핑센터¹⁹¹⁾인 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해당 판매시설(9,526.75㎡)과 부대시설(1,242.08㎡)에 교통유발계수 6.52를 적용하는 대신 판매시설에는 일용품소매점(근

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

190) 이번 감사원 감사 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확정하고 실제 활용 여부를 확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감사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부담금 산정까지는 할 수 없어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만 확정함

191)

대규모점포 등록 현황

구분	등록일	상호	대규모점포 종류	소재지
부평구	2002. 8. 30.		쇼핑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
연수구	2014. 12. 1.	-	쇼핑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

린생활시설)의 교통유발계수인 1.68을, 부대시설에는 기타 시설의 교통유발계수인 1.20을 적용하여 부담금 계 210,910,000원을 과소 부과하는 등 [별표 2] “쇼핑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 명세”와 같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2개 기관에서 관내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2개 시설물에 대하여 계 230,452,970원의 부담금을 과소 부과·징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에 대해 기초자료 입력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210,910,000원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19,542,970원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총 50건의 시설물에 대해 빠른 기일 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

로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제3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BS 외 27명에게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210,910,00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제3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에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19,542,97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누락 명세

(단위: m²)

연번	시설물 소재지	부과대상 (층, 호실)	전체 바닥면적 ¹⁾	부과 대상 면적 ²⁾	재산세 부과시 건물용도	납부의무자	부과 사유	부과대상 적용일
1		지하상가	2,054	2,054	상점 등	-	신축	1990. 12. 23.
2	-외 2필지	1층, 2층, 3층	1,157	1,157	체육시설	-	증축	2016. 4. 22.
3		1층, 2층, 3층	1,847	1,847	상점 등	-	신축	2013. 12. 13.
4	-	B01, B02, B03, B04, 101, 102, 103, 104	1,085	542	상점 등	-	신축	2016. 12. 21.
5		B01, B02, B03, B04, 101, 102, 103, 104		542	상점 등	-	신축	
6	-외 1필지	201, 301, 501	1,498	452	상점 등	-	신축	2005. 3. 14.
7	-	1층, 2층, 3층	1,185	999	사무실 등	-	신축	2016. 6. 1.
8	-	B1-109, F1-102, B1-110	1,375	364	상점 등	-	신축	2017. 6. 2.
9		F1-101		204	상점 등	-	신축	
10	-	1층, 2층, 3층	1,455	602	일반음식점 등	-	신축	2016. 1. 21.
11		1층, 2층, 3층		602	일반음식점 등	-	신축	
12	-	1층, 2층, 3층, 4층, 5층	1,056	1,056	사무실 등	-	증축	2009.10. 5.
13	-	101	3,536	451	일반음식점	-	신축	2015. 7. 1.
14	-	303, 304	1,477	183	상점 등	-	신축	2016. 9. 28.
15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4,960	1,419	상점 등	-	신축	2015. 3. 13.

연번	시설물 소재지	부과대상 (층, 호실)	전체 바닥면적 ¹⁾	부과 대상 면적 ²⁾	재산세 부과시 건물용도	납부의무자	부과 사유	부과대상 적용일
16	-	101, 102, 103, 104, 105, 201, 202, 203	2,852	1,100	일반음식점	-	신축	2012. 12. 24.
17	-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1,977	1,348	숙박시설	-	신축	2016. 6. 16.
18	-	1501	25,893	1,439	사무용 오피스텔	-	신축	2015. 9. 11.
19	-	201	5,955	610	상점 등	-	신축	2013. 8. 9.
20	-	1층, 2층, 3층, 4층	1,320	780	일반게임제공업 시설	-	신축	2016. 9. 9.
21	-	1층, 2층, 3층, 4층	3,810	3,810	숙박시설	-	신축	2016. 8. 12.
22	-	203, 204	5,675	319	사무용 오피스텔	-	신축	2014. 1. 22.
23		201, 202		355	사무용 오피스텔	-	신축	
24	-외 2필지	202	13,086	325	의원	-	신축	2015. 9. 9.
25		205		230	의원	-	신축	
26		206, 207		506	학원	-	신축	
27		208		210	학원	-	신축	
28	-	201, 202	3,044	314	사무실 등	-	소유권 변경	2017. 3. 7.
29	-	203, 204, 205, 206, 210, 215, 217, 218, 220, 221, 222, 224	2,209	218	상점 등	-	소유권 변경	2004. 9. 17.
30	-	101, 102	5,703	293	일반음식점	-	신축	2013. 7. 22.
31	-	101, 102, 103	6,023	294	상점 등	-	신축	2014. 10. 16.
32	-외 5필지	101, 102, 203	1,064	338	사무실 등	-	소유권 변경	2017. 2. 1.
33	-	지하 1호	1,339	390	상점 등	-	신축	2015. 6. 17.

연번	시설물 소재지	부과대상 (층, 호실)	전체 바닥면적 ¹⁾	부과 대상 면적 ²⁾	재산세 부과시 건물용도	납부의무자	부과 사유	부과대상 적용일
34	-	201	1,431	191	상점 등	-	신축	2015. 12. 18.
35	-	지하층 101	1,642	263	상점 등	-	신축	2014. 7. 31.
36	-	201	3,453	419	사무실 등	-	신축	2015. 1..20.
37	-	201	2,326	301	상점 등	-	신축	2012. 4. 27.
38	-	102, 105	14,262	182	상점 등	-	소유권 변경	2015. 11. 12.
39	-	202	2,830	323	사무실 등	-	신축	2016. 2. 23.
40	-	1층, 2층	1,067	1,067	일반음식점	-	신축	2016. 8. 12.
41	-	101, 102, 104, 105, 205	2,579	1,468	일반음식점	-	신축	2013. 6. 5.
42		201		228	의원	-	신축	
43		202		204	의원	-	신축	
44		203		198	의원	-	신축	
45	-	201, 207, 301, 302, 303, 304, 306, 307	1,150	477	상점 등	-	신축	2015. 2. 27.
46	-	201, 202, 203, 204	1,187	375	상점 등	-	신축	2015. 11. 3.
47		109		669	상점 등	-	신축	
48		101, 102, 103, 201, 202, 203, 209	2,580	930	상점 등	-	신축	
49	-	104, 105, 106, 107, 108, 203, 204, 205, 206	1,768	446	상점 등	-	신축	2015. 2. 12.
50	-외 1필지	1층, 2층, 3층, 4층	1,928	1,928	일반음식점	-	신축	2016. 8. 4.

주: 1. 건축물대장에는 소수점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1,000㎡ 이상 여부만 표시하기 위해 소수점 이하는 생략함

2. 건축물대장 면적과 과세대상 면적이 달라 실제 현장조사, 등기부등본 자료를 통해 부과대상 면적을 확정해야 하고 160㎡ 미만 지분 소유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님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쇼핑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 명세

(단위: m², 원)

구분	시설물명 (소유자)	부과대상 면적	적용 계수	실제 부과 금액 (A)	정당 계수	정당 부과금액 (B)	과소 부과금액 (B)-(A)
계	-	15,065.7	-	72,610,310	-	303,063,280	230,452,970
부평구	 (BS 외 27명)	소계 10,768.83	1.68/1.20 (소매점/기타시설)	70,111,460	6.52 (쇼핑센터)	281,021,460	210,910,000
		판매시설 9,526.75	1.68	64,400,880	6.52	249,993,830	185,592,950
		부대시설 1,242.08	1.20	5,710,580	6.52	31,027,630	25,317,050
연수구	- [(주)○○○]	소계 4,296.87	0.61/1.20 (창고업/기타시설)	2,498,850	6.52	22,041,820	19,542,970
		부대시설 (부속창고) 3,297.26	0.61	1,508,800	6.52	16,662,560	15,153,760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999.61	1.20	990,050	6.52	5,379,260	4,389,210

주: - 부대시설은 쇼핑센터 관리사무실 등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